# 변 경 대 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운용 역 변경	모펀드 운용역 변경	환매수 수료 삭제	가입자 격 변경	변동 성	결산	법 개정
1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0	-	-	-	-	-	-
2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0	-	-	-	-	-
3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0	-	-	0	0	-
4	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0	-	-	-	0
5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	-	-	0	0	-	0	0
6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	-	-	0	0	-	-	0
7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	-	-	0	0	-	-	0
8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	-	-	0	0	-	-	0
9	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-	-	0	-	-	-	0
10	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11	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-	-	-	-	0	0	-
12	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13	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1	1	1	-	-	0	-
14	미래에셋EMP스마트포커스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0	-
15	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ı	ı	-	-	0	-
16	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1	-	1	-	0	0	-
17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1	1	1	-	0	0	-
1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1	-	0	0	1
19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1	1	1	-	0	0	-
20	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-	-	-	-	0	0	-
21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-2호	1	1	1	-	-	0	-
22	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	1	1	1	-	-	0	-
23	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(분배형)	1	1	1	-	-	0	1
24	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	1	-	1	-	-	0	-
25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1	1	1	-	-	0	-
26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0	-
27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1	-	0	0	-
28	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1	-	0	0	1
29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30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31	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32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33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ı	1	ı	-	0	0	-
34	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채권)	ı	ı	ı		0	0	-
35	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0	0	-

36	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(주식)	-	-	1	-	0	0	-
37	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1	1	1	0	0	-
38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1	1	1	0	0	-
3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-	1	1	1	0	0	-
40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1	1	1	0	0	-
41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1	1	1	0	0	-
42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1	1	1	0	0	-
43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1	1	1	0	0	-
44	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1	1	1	0	0	-
45	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0	0	-
46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1	1	1	-	0	-
47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48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1	1	1	0	0	-
4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0	0	-
50	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0	-

#### 2. 변경 사항:

- 1) 운용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3) 환매수수료 삭제
- 4)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
- 7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- 3. 효력발생 예정일: 2019년 4월 16일(화)
- 4. 변경 내용:
  - 1) 운용역 변경
- <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b>이승환</b> , 이재일	<u>목대균</u> , 이재일

### 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<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>

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	
<운용전문인력>	<u>이승환</u>	목대균(책임), 강영수(부책임)			

### <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>

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
<운용전문인력>	<u>이승환</u>	<u>목대균</u>		

# 3) 환매수수료 삭제

#### [집한투자규약]

변경 전	변경 후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
<u>(H)(주식)&gt;</u>	<u>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	
<u>(UH)(주식)&gt;</u>	
<u> 종</u> 류A, 종류A-e, 종류AG	
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	
<u> 종류C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</u>	
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u>	
. 미계에 내쉬이나 너는 중 기기를 된 나타스는	
· 30 을 다면: 어디트의 10%	
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	
e, 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	
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	
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	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	
(UH)(주식)>	
	<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 (H)(주식)> <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 (UH)(주식)> 종류A, 종류A-e, 종류AG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 증류C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e2, 종류C-e3, 종류C-e4, 종류C-a, 종류C-b, 종류F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 <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 (H)(주식)> 종류A, 종류A-e, 종류CG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 증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1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 <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

<u>종류A, 종류A-e, 종류CG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 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</u> 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 <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 신탁1호(주식-파생형)> <u>종류A, 종류A-e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 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</u> e, 종류C-I, 종류F, 종류S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 <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 (주식)> <u>종류C-e, 종류CG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</u> A-U :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

#### [투자설명서]

_	[구시 글 6시]		
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- <sup>-</sup> 는 <환매수수료>	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	환매수수료 없음
		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 (H)(주식)>	

종류A, 종류A-e, 종류CG

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

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

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

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

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
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

(UH)(주식)>

종류A, 종류A-e, 종류CG

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

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a,</u>

<u>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</u>

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

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

<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

신탁1호(주식-파생형)>

<u>종류A, 종류A-e</u>

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

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</u>

<u>종</u>류C-I, 종류F, 종류S

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

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

<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

(주식)>

종류C-e, 종류CG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

A-U

: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

#### 4)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
#### 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>

#### 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종류F>	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	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
	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	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

### 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>

### 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종류직판F>	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	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
	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	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
	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	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
	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	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
	한다)	함한다)
	<신설>	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
		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
		<u>- 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</u>
		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
		<u>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
		-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

####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1.95	13.26
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3	3	12.39	13.88
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2.13	13.55
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6	6	0.03	0.02
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-	7.37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-	15.54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9
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5	5	4.25	4.09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19.15	17.71
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3.17	14.02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3	16.06	14.05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4	13.04
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2.48	13.48

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3	-	14.02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5	5	1.68	1.68
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채권)	4	4	-	7.67
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4	4	7.95	7.45
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3	3	11.51	12.2
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(주식)	4	4	5.64	5.09
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4.91	13.93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3	3	11.55	13.45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3	3	12.42	13.94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3	3	11.6	13.5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3.86	3.99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8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4.32	4.2
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4.08	4.69
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	3	3	11.11	13.14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1.74	12.85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4	1.33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9
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28.04	29.66

# 7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### [집합투자규약]

	「日日十八年一」	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		
제20조 (한도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	
및 제한의 예	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	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				
외)	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	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				
	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 <b>부도 등으로 처분이</b>	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 <b>부도 등으로 투자신</b>				
	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	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				
	<u>한 시기까지</u> 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	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				
	로 본다.	<b>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b> )는 그 투자한도에				
		적합한 것으로 본다.				
	(이하생략)	(이하생략)				
제45조(집합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				
투자기구의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			
해지)	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	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				
	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	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				
	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			
	1.~4. (생략)	1.~4. (좌동)				
	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	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				
	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	만,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				
	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	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				

	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	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
		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9조(금전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
차입 등의 제	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	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
한)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
	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	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
	1.~2. (생략)	1.~2. (생략)
	<u>&lt;신설&gt;</u>	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
		<u>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</u>
		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
		<u>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</u>
		<u>령으로 정하는 때</u>

# 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5부. 2. 집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합투자기구	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	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
의 해지에	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	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
관한 사항	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	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
[의무해지]	야 합니다.	야 합니다.
	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	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
	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	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
	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	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
	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	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
	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	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
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
	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	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
	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	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
	우는 제외.	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
		외.

# 미래에셋자산운용㈜